

운송보험보통약관

1.보험계약의 성립

- (1)보험계약(이하 “ 계약” 이라 합니다.)의 청약과 우리회사 (이하 “ 회사” 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2)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당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 (3)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4에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보상하는 손해

- (1)전위험담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 “ 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전손 및 분손담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 “ 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또는 충돌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전손 및 분손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하역 또는 이적중에 보험의 목적의 추락으로 생긴 매 해당 전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3)전손담보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 “ 보험의 목적” 이라 합니다.)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 운송용구의 탈선, 전복, 추락, 화재, 폭발 또는 충돌로 생긴 보험의 목적의 전손을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하역 또는 이적중에 보험의 목적의 추락으로 생긴 매 해당 전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3.보험료

- (1)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 (2)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최초의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보험기간

- (1)회사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할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을 보험증권에 기재한 발송지의 보관장소 (이하 “ 창고” 를 포함합니다)에서 반출(적재위험을 포함합니다)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 (2)회사의 책임은 아래의 경우에 끝납니다.
 - 1)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보험의 목적이 반입 (하역 위험을 포함합니다)되었을 때.
 - 2)보험의 목적이 위 (1)의 보관장소에 반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의 보관장소에 도착한후 24시간이 경과된 때.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이들의 사용인 으로서 운송에 종사하는 자의 고의
 - 2)보험의 목적인 화물의 하자, 자연적인 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썩, 곰팡이, 부패, 변색,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 3) 포장의 불완전
 - 4) 운송의 지연
 - 5) 핵연료물질(사용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방사성, 폭발성,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 6) 위 5)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7) 전쟁으로 인한 손해
 - 8) 이사화물중 독 또는 황아리, 병 등의 파손 및 이에 수송한 유동품의 멸실
-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특별약관으로 별도 약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동맹파업, 태업, 작업장 폐쇄, 쟁의행위, 폭동,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

- 2) 억류, 압류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 3) 지진(지진에 의한 해일을 포함합니다),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사고
- 4)보험의 목적이 아적되거나 무개화차, 완전히 피복되지 아니한 운송용구에 적재된 경우, 그러나 유 개화차, 완전히 피복된 운송용구에 적재했다라도 발생되었을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기화물을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 6) 냉동냉장고 및 냉동냉장기계장치(냉동냉장기계, 팬(Fan), 기타의 부속기구 및 이들을 작동시는 동력기계를 포함합니다.)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손해

6.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 (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보험가입금액

-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결정하며 회사와 합의하여 도착으로 얻을 이익도 보험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2) 위 1의 보험가액은 보험의 목적을 발송한 때와 곳에 있어서의 가액(도착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기타 비용과 도착으로 얻을 이익을 포함합니다.)을 말한다.

보험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사항

8.계약 후 알릴 의무

- (1)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위험이 뚜렷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
 - 2) 보험가액이 뚜렷하게 감소한 때
 - 3) 다른 계약을 맺을 때
 - 4) 양도할 때
 - 5) 예정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아래의 사항이 확정되었을 때
 - 1.운송용구의 종류 2.운송일자 3.보험의 목적의 수량 4.보험의 목적의 가액 5.발송지 및 도착지
 - 6) 보험계약청약서나 증권에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 (2) 회사는 위(1)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3의2에 따릅니다.

9.계약의 무효

- (1)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1)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때
 - 2)보험의 목적에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10.계약의 해지

- (1)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 (2)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6에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9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3) 상당한 이유없이 19의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 (3)위(2)의 1),2)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2)의 1),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 된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1.보험료의 환급

- (1)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무효가 되거나 책임개시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액을 돌려드리고 책임개시후 사고발생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반액을 돌려드립니다.

손 해 의 발 생

12.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2) 그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의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3) 회사는 위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손해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방지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 (2) 회사는 위(1)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의한 비용 (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15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회사는 16의 지급보험금에 위 (2)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보 험 금 의 지 급

14.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가 1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짧은 시일 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해당액 이상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5.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1)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3)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손해액x이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x이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3) 위 (1),(2)의 손해액은 8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16. 분적시의 계약의 분리

보험의 목적이 이량 또는 이대 이상의 운송용구에 분적되거나 이적 되었을 때에는 일량 또는 일대마다 각각 별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합니다.

그 밖 의 사 항

17. 대위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대위하는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18. 보험의 목적의 조사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험의 목적, 운송적재상대 및 관련장부 등을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9. 분쟁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에 설치된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점 또는 지정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법원으로 합니다.

21.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추 가 약 관

1.상표등 추가약관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상표등이 붙은 화물(라벨이 붙은 화물을 말합니다)인 경우에 그 상표등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표등의 대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2.화폐, 유가증권등 추가약관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그 피용자가 호송인을 붙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기계류에 대한 추가약관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기계류와 그 부분품인 경우에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부분의 대체품 구입대금 또는 수선비와 필요한 재시설비 및 운송비를 가산한 값으로 합니다. 대체 구입품으로 관세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에 관세액에 관세액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에 가산합니다.

4.공동보험약관

이 보험증권은 ()보험주식회사가 다음의 공동보험자를 대신하여 발행하며 각 공동보험자는 다음에 명시된 인수분에 대해 각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을 짐을 약정합니다.

위의 여러보험자의 인수분에 대한 독립적 책임부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지불할 보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간사회사가 단독으로 이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이 간사회사가 공동보험자를 대신하여 전적으로 이를 처리함을 약정합니다.

5.보험금 지급 추가약관

우리회사는 이 보험증권하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으면 이를 ()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특 별 약 관

1.우.담수유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우.담수유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2.구손위험담보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구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3.오손 및 찰손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손 및 찰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4.충식손 및 서식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총식손 및 서식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5.도난불착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도난불착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6.파손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파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7.곡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곡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8.부족손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육상(호천을 포함합니다)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부족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운송보험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각 조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특별약관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9. 자기화물운송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의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자기화물을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도 매사고당 당해 운송영구에 적재된 화물의 보험가입금액의 ()%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0.야적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의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운송과정중 통상적으로 따르게 되는 야적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담보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1.무개화물에 대한 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의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개차(통풍차, 가축차, 우루차 등 무개차에 준한 것을 포함합니다)에 적재된 보험형에 가입한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2.냉동 냉장기관 특별약관

(1)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의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이 증권에 기재된 냉동냉장기관(냉동냉장컨테이너를 포함합니다)안에 있는 동안에 소정의 할증보험료를 받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냉동냉장고의 파손, 고장

2)냉동냉장기계장치의 파손, 고장

(2) 위(1)의 “냉동냉장기계장치”라 함은 냉동냉장기계, 팬, 기타의 부속기구 (이들을 작동시키는 동력기계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13.동맹파업폭동소요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의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맹파업, 태업, 작업장폐쇄, 쟁의행위, 폭동,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 (이하, “보험의 목적”이라합니다)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의 5),6)의 핵연료물질등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의학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용도로 제공되는 라디오액티브아이스토프(우라늄,트륨,프로토늄 및 이들의 화합물이나 이들의 함유물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의 원자핵반응이나 원자핵의 붕괴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억류,압류 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2)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억류, 압류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대한민국의 법령위반에 의한 억류,압류는 제외합니다)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5.지진분화위험담보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2의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지진에 의한 해일을 포함합니다), 분화 또는 이와 비슷한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6.공중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육상으로 운송하는 도중 부득이 공중으로 운송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운송보험 보통약관 및 기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7.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우리회사는 운송보험 보통약관의 제1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화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